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8나2048435 판결 [이행보증금 청구]

전 문

원고, 항소인 A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성희, 이원석

피고, 피항소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김윤찬

변론 종결 2019. 5. 9.

판결 선고 2019. 6. 13.

제 1 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가합56911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각 보증은 기한연장 성격의 갹신보증이라는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는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매년 거래기간이 자동연장되는 조건으로 B에 게 농산물(양곡)을 공급하는 내용의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외상거래약정에 따른 B의 물품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보증금액(2억 7,000만 원)과 보증기간(1년)이 동일한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피고는 지급보증의 상대방(이하 '보증처'라 한다)인 원고에게 기한연장의 취지로 보증서를 발급한다는 점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을 제10호증), 종전 보증서상의 보증금액을 새로운 보증서로 담보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10호증)까지 교부해 주었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은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갹신보증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에는 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이 사건 각보증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이 사건 각 보증서 중 2016. 4. 29.자 보증서는 구 보증서에 기한 채무를 모두 승계한 것임이 명백한 바, 피고는 원고에게 2016. 4. 29.자 보증서에 따라 B의 물품대금 채무 중 보증한도인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계속적 거래관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특정채무를 일정한 보증한도와 기간을 정하여 보증하는 이른바 근보증의 경우, 채무자의 신용은 보증기간 전체에 관하여 파악되는 것이지 개개의 특정 채무의 발생시점별로 개별적으로 파악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채무의 원인이 되는 일련의 대출 중 비록 소액이더라도 최초의 대출이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실행되기만 하면 그 이후 약정 보증기간 동안 실행되는 대출에 대하여는 그 상환기일을 묻지 않고 근보증의 대상이 되는 보증관계가 성립하고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참조), 이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보증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구 보증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채무자로 하여금 기존의 보증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하는 이른바 갱신보증은 그 실질에 있어서 구 보증의 보증기간 연장에 불과하고 따라서 갱신보증서 발급 당시 남아있는 기존 채무도 갱신보증에 의하여 담보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2001다754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28849 판결 등 참조). 한편, 제2차보증서 발급일 이전에 한도거래대출이 이루어져 그 대출에 의한 채무잔액이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용인하면서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고 제2차 보증에 의한 근보증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제2차 보증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2차 보증계약이 제1차보증계약과 보증기간을 달리하고, 제2차 보증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보증서도 새로 발급된 이상, 제2차 보증계약이 제1차 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 보증기간을 연장할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라 하더라도 제2차 보증계약은 제1차 보증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4다27730 판결,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2다200363 판결 등 참조). 결국 갱신보증이 구 보증의 기한연장에 불과하여 기존의 채무도 당연히 담보하는 것인지, 구 보증과 별개의 신규보증으로 갱신 이후의 채무만을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에 갑 제10호증, 을 제6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보증, 특히 2016. 4. 29.자 보증은 구 보증과는 별개의 신규보증으로 갱신 이후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일 뿐, 구 보증의 기한연장으로 기존 채무의 부담을 포함하는 갱신보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보증서는 보증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새로 발급되었고, 보증기간이 1년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며, 보증채무범위도 '보증기간 중에 주채무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는 채무' 또는 '보증기간 중에 발생하고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채무' 등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반면,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채무범위에 구 보증 내지 기존 보증에 의하여 담보되었던 주채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내용도 찾아 볼 수 없다.

(2) B는 이 사건 각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에게 보증금액,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 지급보증 거래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피고가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구 보증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갱신보증의 내용으로 보증서를 발행하는 경우와 달리, 위 지급보증 거래신청서에는 '구 보증서 잔존채무 승계' 또는 '구 채무 승계' 등 기존 채무를 포함하는 어떠한 특약사항의 기재도 없다.

(3) 이 사건 각 보증서 중 2014. 4. 30.자 보증서에는 특약내용으로 2013. 4. 30.자 보증서를 지칭하는 '기은 C 회수조건'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의 지급보증업무처리절차에 있어서 지급보증서에 대한 기간연장은 구 보증서의 보증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보증처에 대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종전 보증서를 회수한 후 신규로 보증서를 발급하되, 지급보증에 대한 여신계좌만 연장하는 업무이므로, 당초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채무를 연장하는 것은 아니며, 기간연장 처리로 종전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채무는 소멸하고, 신규 보증서의 보증기간에 대한 새로운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구 보증서 회수조건'의 특약만으로 이 사건 각 보증이 기존 채무를 담보하는 기한연장의 갱신보증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는 '종전 보증서의 보증채무가 소멸하고, 신규 보증서의 피보증채무 내용에 따른 새로운 보증채무가 성립하는 것'을 주의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4) 피고는 2016. 4. 29.자 보증서 발급 당시, 내부 심사과정에서 보증신청인의 보증신청사유를 '최장기일초과 기간연장 요청'으로 기재하였다. 피고가 운전자금대출을 위한 기업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의 신용도, 상환능력, 자금의 회전기간, 자금용도 및 이익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장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년 이내의 기간단위로 여신기간을 연장하여

운용하되, 본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장기간 5년의 예외로 취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각 보증서의 지급보증기간이 통산하여 5년의 최장기간을 초과함에 따라 2016. 4. 29.자 보증서를 추가로 발행하기 위해 해당 영업점에서 본부의 승인을 얻는 과정에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피고는 2015. 6. 24. 원고에 대해 '2015. 4. 30.에 발행된 지급보증서(D)에 대하여 구 보증서(E)가 2014. 4. 30. 만기 도래함에 따라 이를 회수 조건으로 하여 새로이 발행된지급보증서임을 확인하고, 2014년 B에 출고된 원료 중 지급보증서 금액에 대해 2015. 4. 30.자보증서(D)를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보증서 및 지급보증 거래신청서 자체에는 위와 같이 기존 채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보증서 중 2015. 4. 30.자 보증서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별도의 확인서가 발급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확인서를 근거로 2016. 4. 29.자 보증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보증서가 기존의 채무 부담을 포함하는 갹신보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6) 2011. 4. 29.자, 2014. 4. 30.자 및 2016. 4. 29.자 보증서의 각 보증요율은 연 2.149%, 연 2.84%, 연 3.862%로 점차 증가하였는데, 피고가 일반적으로 기업여신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조달원가, 부대비용, 신용관리비용, 기본마진 순으로 합산하여 적용여신금리를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른 지급보증요율에 보증금액을 곱하여 보증료를 산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보증요율의 증가는 여신기간이 통산하여 최장 5년을 초과함에 따라 그로 인한 위험부담으로 피고의 신용관리비용이 증가한 데서 비롯된 것일 뿐, 기존 채무의 부담을 포함하는 기한연장의 갹신보증과 대가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위반 주장

1)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보증서 및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 보증서의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경우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등 그 책임범위가 제한된다면, 이 사건 각 보증서의 보증기간, 보증채무범위, 이행청구기간 및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의 관련 규정은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보증신청인인 B 뿐만 아니라 보증처인 원고에 대하여도 이를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보증책임의 제한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2016. 4. 29.자 보증서에 따라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중 보증채무범위에 해당하는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른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라 고 하더라도, 고객이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5. 27. 선고 2007다8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5,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은행의 운전자금대출 등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보증채무를 비롯한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그 소멸에 관한 규정들은 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들로, 금융업무로서 신용사업을 수행하는 피고로서는 그 내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 사건 각 보증서 및 지급보증거래 신청서에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및 이행청구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청구기간 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을 때에는 은행의 보증채무가 소멸한다'는 내용의 주채무 성립기한을 제한하는 약관조항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에 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신의칙상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

1) 주장 요지

원고가 2011년경 B와 체결한 농산물(양곡) 외상거래약정은 매년 1년 단위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1. 4. 29. B와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B의 지급보증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후 2016. 4. 29.까지 매년 동일한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보증서를 담보로 위 외상거래약정을 1년씩 연장하였다. 특히 피고는 2016.4. 29.자 보증서 발급 당시, 지급보증 신청사유를 '최장기일초과 기간연장 요청임'이라고 기재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증이 기한연장의 갱신보증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일한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해 주었다. 만약 원고가 기존 보증서로 담보되는 채무가 보증기간 만료 후 새로 발급되는 보증서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기존 보증서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을 청구하였을 것인데,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도 받지 못해 이 사건 각 보증서에 기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는 2011. 4.경부터 2016. 4.경까지 B가 원고에게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매년 동일한 보증금액의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하여 보증기간을 연장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2. 24. 원고로부터 보증금 지급청구를 받자이를 거절하였는바, 이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신의에 반하는 것으로 정의관념에 비추어용인될 수 없다.

2) 판단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한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80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보증서에는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이행청구시기 및이행청구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증서에서 정한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보증기관인 피고로서는 채무자에게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에게 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것을 알릴 의무도 없는 점, 원고는 B와

농산물(양곡) 외상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B로부터 '경기도 여주군 F 부동산(건물포함)'을 담보물로 제공받았고, B 대표 G의 연대보증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급받은 이 사건 각 보증서에 따라 보증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원고가 위와 같은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2016. 4. 29.자 보증서에 기한 원고의 보증금 청구를 거절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판사 김형진, 판사 원종찬